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75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26	안상훈의원	2024. 8. 19.	2024. 11. 14.
	3311	서영석의원	2024. 8. 28.	2024. 11. 14.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2. 21.) 비용 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 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 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로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 등) ① ~ ⑥ (생	치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
	<u> </u>
	2.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
	<u>지 못한 경우</u>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u>+</u>
②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	<u>®</u>
용윤리위원회의 <u>구성 및 운영</u>	<u>구성, 운영 및 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u> 정 해제</u>
부렁으로 정한다.	
<u> <신 설></u>	제20조의2(교육명령)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2. (생략)

③ • ④ (생 략)

 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